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08. 10. .

제 출 자:평 창 군 수

1. 제안 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. 2. 29일 개정됨에 따라 「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의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제1조 중 "지방재정법 제16조의2"를 "「지방재정법」제33조 제5항 및 제6항"으로 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관계부처 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

마. 신구조문대비표: 별첨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재정법 제16조의2"를 "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5항 및 제6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</u> <u>제16조의2</u> 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지방재정</u> 법」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-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